

4.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1999-245호 1999. 7. 22.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법률 제5,908호, '99. 2. 8.)되어 주택건설공사중 도배·도장·조경공사 등 기타 경미한 공사는 감리범위에서 제외하고,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교통안전시설물공사·가구공사·주방용구공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자격을 단지의 규모에 따라 특급 또는 고급감리원으로 하도록 하고 공사 공종별로 1인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토록 하는 등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정함으로써 감리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회보